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84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: 안호영·장철민·송옥주

송갑석 · 양이원영 · 김윤덕

서삼석 • 아주(비) • 윤준병

윤미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제도는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9조의4제1항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4제1항 중 "1회"를 "2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휴직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	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
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	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
근로자는 육아휴직을 <u>1회</u> 에 한	2ুুু্র্য
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